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단 수영장 운영수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수칙은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단 검단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청라문화센터, 여가생활시설(서구청소년센터), 원당문화체육센터, 불로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제공 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운영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 신청한 고객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수영장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3. “등록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일자를 말한다.
4. “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수영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5.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본 운영수칙에 따른다.

- 제4조(운영수칙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운영수칙의 내용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약식으로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수칙(별표)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이용자가 변경된 운영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운영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주의사항 및 시설이용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이용자는 당해 수영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회손에 주의 하여야한다.

③ 이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센터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며 보관하지 않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센터 이용전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⑥ 이용자는 본 운영수칙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수영장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대별 프로그램 내용
2. 지도강사의 자격사항
3. 프로그램 사용료
4.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5. 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 센터는 이용자가 수영장 및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제8조(회원의 종류) 이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2. “일일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3. “신규 회원”이라 함은 당해 수영장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 가. 반환 후 재가입 회원
 - 나. 타 프로그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회원
4. “기존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5. 월 수영강습 프로그램은 1인 1개 강습반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영강습 프로그램과 아쿠아로빅, 자유수영 등은 동시 등록 가능.)

제9조(회원의 자격) 수영장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제한) 제9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용자.
2.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센터는 수영장 수영조 수심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수영조 깊이 확인]
 - 국민체육센터 1.0m 이하(수영조 깊이 0.75m)
 - 검단복지회관 1.3m 이하(수영조 깊이 0.9 ~ 1.1m)
 - 청라문화센터 1.0m 이하(수영조 깊이 0.6m)
 - 서구청소년센터 1.2m 이하(수영조 깊이 0.9 ~ 0.95m)

- 원당문화체육센터 1.35m 이하(수영조 깊이 1.25m)

- 불로문화체육센터 1.45m 이하(수영조 깊이 1.35m)

(단, 유아반 등 특화 수영프로그램 운영 시 입장 제한 예외 적용 가능)

4. 유아(36개월 이상) 및 개인이 부대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성인보호자와 동반 이용하여 입장이 가능하다. 단 원당, 불로문화체육센터는 강습을 제외한 자유수영 시 보호자 동반 상관없이 수영조 수심에 따른 입장기준 이하 이용객 입장 불가

제11조(회원모집) 센터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회원모집 시 서구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2. 회원모집 방법은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 인원에 대하여는 신규회원 온라인 추천제로 모집하며 추가 접수 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3.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센터 운영상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수영장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 신청) ① 센터의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온라인 등록시스템 회원가입 및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되지 않게 수시로 갱신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계 법규 및 당해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다.

②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회원증) 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RFID카드(본인인증방식), NFC 기능이 있는 핸드폰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시 반드시 본인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1. RFID 등록가능 카드(회원증,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2. NFC 기능이 있는 **휴대폰, 모바일 회원카드 사용가능**

- ② 회원증(RFID 카드, NFC 기능 핸드폰)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대여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③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센터에서 발급된 회원증을(은)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 ④ 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반환 및 변경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 •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센터 사정 및 정원 60% 미만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반환
3.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10%를 공제 후 환불
4.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함. 체육시설업]

- ②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시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료를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③ 사용료 반환신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키오스크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시 회원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된 회원증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에는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6조(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 ① 프로그램의 변경은 프로그램 사용 등록일 이후 추가 회원 등록기간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2:00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공단 센터는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7조(회원자격의 소멸) ① 회원이 센터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소멸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센터에 회원증을 반납 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하였을 때
3.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회원들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수영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센터에서 정한 약관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5장 시설이용 및 손해배상

제18조(시설이용 및 휴관) ①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키오스크 및 전자 출입시스템에 본인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시설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시간대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자는 등록된 프로그램 시작 30분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강습시간 외 탈의실 이용시간은 입장 시 30분, 퇴장 시 30분[이내로]으로 최대 1시간을 넘지 않는다.

4. 수영장내에는 수영모자를 필히 착용하며, 자유수영시 튜브, 오리발, 스노클, 스쿠버다이빙 슈트 등의 수영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②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2. 센터는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센터는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수영장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센터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지병 또는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 본인의 과실 및 고객 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열쇠분실 시 교체료 7,000원을 변상 한다.

제20조(소지품의 보관) ① 이용자는 센터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④ 이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⑤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실물의 처리) 센터 내에서 습득한 유실물(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귀중품등)에 대하여는 유실물법·유실물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단, 수영복, 수영모, 샤워용품 등 분실물은 습득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 후 자체 폐기처분 한다.

제6장 개인사물함

제22조(이용자격) 개인사물함은 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3조(이용료)**
- ①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1개월 단위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개인사물함의 이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해 월사용으로 본다.
프로그램 할인을 받으셨다하여도 개인사물함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단위이므로 일수계산 환불이 불가 합니다.
 - ③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기준 3,000원 ~ 5,000원 범위내로 한다.

제24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보관책임)**
- ①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과 위험물(인화성물품)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 가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② 기타 소지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제20조에 의한다.
 -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물함 반환) ① 이용자는 당해 체육시설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종료일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해 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5일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 내용물에 대한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를 확보 한 후 임의로 회수한다.

제27조(보관물품의 폐기)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임의로 폐기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조(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1.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사물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7장 기 타

제29조(고지) 본 운영수칙에 의거 센터는 별표의 이용규정을 안내데스크 게시 또는 회원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본 운영수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수칙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운영수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이 수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1>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주요 운영수칙[공통]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운영시간 (수영장)	평 일 : 06:00~22:00 / 토요일 : 06:00~17:00	센터 운영에 따라 운영일 조정 가능	
등록 안내	등록기간	- 기존회원 : 매월 20일~23일 / 신규회원 추천신청 : 매월 24일~25일 - 당첨자등록 : 매월 26일~29일 / 추가모집 : 매월 30일~말일	
	등록시간	1. 기존회원 - 현장등록 : 평 일 06:00~21:00 / 토요일 06:00~17:00 - 온라인 등록 - 06:00~22:00 2. 추천신청 : 10:00~17:00 3. 당첨자등록 : 10:00~17:00 4. 추가등록 : 10:00~17: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온라인 등록만 가능하며 현장 등록 불가)	
	신규추천	매월 26일(10:00시 인터넷 추천) 신규 회원에 한함.	
	등록방법	- 온라인등록 : 온라인 등록시스템 등록 - 현장 등록 : 수영장 키오스크, 안내데스크 / 수납방법 : 신용카드	
이용료 할인	1. 50% 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장애인, 경로우대(65세 이상) 2. 30% 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다자녀 할인 3. 20% 할인 : 서구 자원봉사자(서구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4. 10% 할인 : 여성보건(12~55세) 5. 5% 할인 : 그린카드 소지자 *할인율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서구청소년센터, 검단복지회관은 별도 조례 적용으로 한부모 가정 할인 없음	중복할인 불가 증빙서류 지참	
반 변경	- 등록일 이후 추가등록 기간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반 변경 차액금 발생 시 추가 납입 후 변경 가능		
환 불	- 강습 전 : 이용료 10% 공제 후 환불 - 강습 후 : 이용료 10% 공제 및 30일 기준 일할금제 후 환불 * 그린카드 할인의 경우 할인 미적용 금액으로 일할계산	신청에 의하여 수시 가능 [소비자분쟁기준]	
수영 강습	이용료	- 주 3회 강습 : 성인 52,000원 / 중·고생 44,000 / 초등학교생 38,000원 - 주 2회 강습 : 성인 49,000원 / 중·고생 41,000 / 초등학교생 35,000원	
	입 장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	
	시 간	매 시간 기준 50분 운영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함.	
자유 수영	월 회원	이용료	개인 : 성인 42,000원 / 중·고생 33,000원 / 초등학교생 28,000원
		이용 시간	* 자유수영 운영 시간은 센터의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변경 가능 (센터별 수영프로그램 시간표 및 이용 안내 참조)
	일일 입장	요금	- 개인 : 성인 5,000원 / 중·고생 3,000원 / 초등학교생 2,000원 - 단체 : 성인 4,000원 / 중·고생 2,500원 / 초등학교생 1,500원
		이용 시간	* 자유수영 운영 시간은 센터의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변경 가능 (센터별 수영프로그램 시간표 및 이용 안내 참조)
개인사물함	- 이용료 : 1개월 3,000원 ~ 5,000원 - 이용기간 : 월 단위 등록 사용 - 중도에 사용신청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해 월사용으로 환불 불가		
휴 관 일	법정·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기 타	1. 본인과실 및 고객 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민, 형사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시설파손 및 개인휴대품 분실은 이용자 책임(중요품은 사전 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 3. 센터 이용전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열쇠분실 시 교체료 7,000원을 부과한다. 5. 회원카드 분실시 제작비 1,000원 본인 부담		

개인사물함 운영수칙

1. 개인사물함은 시설을 이용하는 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인 1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미등록 시 사물함을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이용자는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월 사용료 3,000원 ~ 5,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단위로 사용 개시 후 이용료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개인사물함의 이용연장 및 등록은 매달 회원등록 기간과 같습니다.

재등록	매달 20일 ~ 23일 까지
신규등록	매달 26일 ~ 29일 까지
추가등록	매달 30일 ~ 말일 까지

※ 회원등록 시 개인사물함 등록을 동시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사물함의 양도 및 양수는 금지하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과 위험물 (인화성물품)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도난 및 분실로 인한 손해를 일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6. 재등록 없이 개인사물함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 내 물품은 별도 보관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물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임의로 폐기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물품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